

3. 土地超過利得稅法 施行規則中 改正令

財務部令 第1,915號 1993. 3. 2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8월14일”을 “8월25일”로 한다.

제9조제4항 및 제5항중 “8월14일까지”를 각각 “8월25일까지”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염전용 토지) ① 영 제17조제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금 1톤의 평균판매가액 및 염전 1헥타르의 평균토지가액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금 1톤의 평균판매가액=

$$\frac{\text{당해 염전에서 생산하는 소금을 판매하여 얻은 총수입금액}}{\text{소금 판매량(톤)}}$$

2. 염전 1헥타르의 평균토지가액=

$$\frac{\text{당해 염전의 필지별 토지가액의 합계액}}{\text{당해 염전의 면적(헥타르)}}$$

②제1항제1호에 규정된 총수입금액과 소금 판매량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제1항중 “제1호의 비율”을 “제1호의

비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중 “제1호의 비율”을 “제1호의 비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20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영 제23조제4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이라 함은 택지개발촉진법 및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을 말하며, “재무부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라 함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지구를 말한다.

제32조제1항중 “별지 제22호서식”을 “상속세법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규정된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별지 제23호서식”을 “상속세법시행규칙 제12조제16항에 규정된 별지 제16호서식”으로 한다.

[별표 3]의 제목중 “(제11조제1항관련)”을

“(제11조제5항관련)”으로 한다.

부 칙

[별표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

을 각각 삭제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의 개정(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5)에 따라 동일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염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토지 판정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그 변경된 판정기준의 산정을 위한 소금 1톤의 평균판매가액과 염전 1헥타르의 평균토지가액의 계산방법을 정함(제12조의 2).

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 취득일부터 1년까지 당해 토지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아니한 경우에 당해 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토지로 보도록 하고 건축물의 건축여부를 신축중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공사완성정도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종전에는 공사비지출비율이 공사기간경과비율 이상인 경우에 당해 신축중인 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완화하여 공사비지출비율이 공사기간경과비율의 50퍼센트이상이면 당해 신축중인 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함(제20조제1항).

다. 토지의 취득 후 일정한 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사실상 당해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이를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그 개발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사업 완료후 1년까지는 토지초과이득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바, 이경우의 개발사업지구의 범위에 택지개발예정지구와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포함시키도록 함(제20조제4항).

〈재무부 제공〉